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이윤진 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수시과제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된 자료입니다.

### 【집필진】

이윤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장희선 연구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박은영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립디엔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목 차

1. 매뉴얼 개발 배경 .....	01
2.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 [교육편] .....	03
3.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 [실천편] .....	23
● 참고문헌 .....	47
● 부록	
부록 1. 기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요령 .....	53
부록 2. 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 .....	56
부록 3. 유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진단 .....	58
부록 4. 성인 우울자가선별검사 .....	60

(Center for Epidemiological-Depression Scale : CES-D)



## 1

## 매뉴얼 개발 배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무상 보육·교육의 확대 실시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교육기관(이하 ‘기관’)의 기능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기관은 제2의 가정이라고 일컬어 질 만큼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가치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기대와 요구도 증대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저출산,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국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말미암아 학부모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학부모와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해롭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언론에 의해 노출된 기관 내 학대 발생 사례는 학부모와 대중들에게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해로움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기관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관 내 학대를 예방하고 영유아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었고, 모색 방안의 하나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관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본 매뉴얼이 제작되었다.

본 매뉴얼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기관 내 종사자인 원장 및 교사, 기타종사자를 직접적

---

※ 본 매뉴얼에서는 기관 내 영유아를 지칭하고자 할 때 가급적 ‘영유아’로 지칭하고자 하나, 국내 주요 법과 제도, 지침들에서 영유아는 아동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유아를 ‘아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경우 ‘아동’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매뉴얼에는 영유아와 아동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기관에서의 돌봄과 교육이 학부모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장-교사-학부모 간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 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한 학대에 대 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① 목적

- 영유아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 아동학대사례 검토 및 현장 인터뷰 기반의 실효성 높은 실천 지침 제공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교사·원장 간의 협력과 신뢰 높은 교육환경 조성

### ② 구성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 [교육편]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실천 방법 [실천편]

본 매뉴얼이 학부모·교사·원장 간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기관 내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2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 [교육편]

## 기관의 역할 이해하기

기관은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영유아의 주요 생활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생활·교육 공간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 아동학대 행위 이해하기

## 아동학대 정의

## ▶ 법적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로 정의되고 있다. 흔히 보호자를 부모에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다.

기관 종사자들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들에 대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1 | 아동복지법 상 금지 행위

금지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1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6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는 아동권리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법적 금지행위에서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어떠한 행위들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학대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에 대해 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민감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아동권리 침해의 부적절한 행동이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가 이를 통해 스스로의 상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돋는다. 종사자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2-2 |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sup>1)</sup>

구분	내 용
1	<p>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돼지야!", "이 뭇생긴 게", "멍청야!", "비보", "나가죽어라" 등)</li> <li>• 아동을 비판, 비난, 조롱, 모욕, 우롱하지 않아야 한다. ("넌 혼자 이것도 못하니?",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무시하는 행위 등)</li> </ul>
2	<p>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연령이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li> </ul>
3	<p>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웃자 다 셀 때까지 해!", "엄마한테 일찍 데리려 오지 말라고 할거야!", "동생반이나 원장반으로 보내버릴거야!", "엄마, 아빠한테 이를거야!", "집으로 내쫓을거야!",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li> </ul>
4	<p>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원장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li> </ul>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 도구로 아동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6	화장실, 창고 등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
7	<p>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통을 지르지 말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 거야!"</li> </ul>
8	<p>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li> </ul>

1) 본 체크리스트는 부정적 경험을 얼마나 자주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권리 침해 행동은 단 한 번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하여, 빈도를 제외하고 각 경험 문항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표현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내 용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훈드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li></ul>
10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간 다툼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li></ul>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아동이 자는 낮잠시간에 책상 위에 의자를 두는 행위,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행위, 아동이 흘린 음식을 먹게 하거나 기저귀를 긴 시간동안 갈아주지 않는 행위 등</li></ul>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등</li></ul>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저귀같이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li></ul>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어린이집용).

## 기관 아동학대 이해하기

관계 법령과 체크리스트에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들은 다소 규범적이고 광범위하다. 기관에서 실제 발생했던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에

게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들의 특징 및 제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최근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최근 3개년 동안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는 각 해마다 발생했었던 아동 학대사례의 약 5% 내외로 확인된다. 기관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사례 중 어린이집에서의 발생 비율은 유치원에서의 발생 비율에 비해 약 2.5~3배 정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은 39,000여 곳이 운영되고 있고 유치원은 9,5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이 4 대 1정도임을 감안할 때<sup>2)</sup>, 최근 3년간 기관의 시설 수(규모) 대비 실제 아동 학대 발생 비율은 어린이집(2016년 학대 발생 수는 전체 어린이집 규모의 1.5%에 해당)에서보다 유치원(2016년 학대 발생 수는 전체 유치원 규모의 2.6%에 해당)에서 다소 높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증가 수준은 유치원에서보다 어린이집에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 기관 학대사례의 행위자 대부분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인 학대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표 2-3 | 최근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2014년-2016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동학대사례	10,027(100%)	11,715건(100.0%)	18,700건(100.0%)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발생 건(비율)	396건(4%) (어린이집 300건, 유치원 96건)	639건(5.5%) (어린이집 432건, 유치원 207건)	848건(4.5%) (어린이집 601건, 유치원 247건)

2)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학대행위자	보육 교직원 295 (2.9%)	유치원 교직원 993) (1%)	보육 교직원 427 (3.6%)	유치원 교직원 203 (1.7%)	보육 교직원 587 (3.1%)	유치원 교직원 240 (1.3%)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6)

#### ▶ 기관 내 아동학대사례 실재

##### ■ 학대유형별 세부 행위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꼬집기 또는 입술로 아동을 물었던’ 행동이 가장 빈번했었고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과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 정서학대의 행동 역시 전체 정서학대사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었고 방임 행동은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둔’ 행동이 가장 빈번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유형별 발생사례 예시

구분	학대 행위 유형	실제 예시 사례	발생 비율 (%)
신체 학대	•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물기	다른 아동을 깨물어 피 나게 한 만 2세 아동의 영덩이를 2차례 손으로 때리고 깨물며 볼을 꼬집음	60.0
	• 도구로 때리기	만 6세 아동이 한글 모른다는 이유로 가위와 연필로 10번 정도 찌름	22.4

3) 학대행위자의 수(99)가 발생 건 수(96건)에 비해 많은 것은 1건의 아동학대사례에서 여러 명의 학대행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구분	학대 행위 유형	실제 예시 사례	발생 비율 (%)
정서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li> </ul>	친구와 싸운 만 3세 아동 억지로 팔 끌고 가서 4~5차례 양쪽 어깨 흔들며 확 젖힘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로 차기/때리기</li> <li>물건던지기</li> <li>특정 상황에서 해 입히기</li> </ul>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및 축대를 들이받아 아동에게 해를 끼침	5.1
	소 계		100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의 인격 및 감정과 기분 무시 또는 모욕</li> </ul>	매운 음식 섭취 시 물 못 마시게 하고, 밥 먹는 속도 느리면 연령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함	33.3
	공포분위기 조성	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공포분위기 조성	31.6
	아동을 가둠	아동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불 꺼진 화장실이나 방에 가둠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 표현</li> <li>내쫓거나 버리겠다고 위협</li> <li>교사 간 싸움에 노출</li> <li>시설 내 폭력에 노출</li> <li>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및 강요</li> </ul>	10~19개월 된 유아에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원장과 학부모간 심한 폭언이 오가는 상황을 원아들에게 노출	22.8
	소 계		100



구분	학대 행위 유형	실제 예시 사례	발생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전하지 않은 환경</li><li>• 실내외 시설 및 설비에 안전장치 미설치 및 위험요소 존재</li></ul>	교구장을 아동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입구에 세로로 세워놓아 아동을 위험 상황에 방치시킴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지 못함</li><li>•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li></ul>	곰팡이 펀 장난감을 아동에게 제공하였으며 원내 수족구 걸린 아동을 등원시켜 다른 아동들이 전염됨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필요한 의료처치 비제공</li></ul>	24시간 어린이집에서 관리 소홀로 아동들 아토피 및 습진 등 피부병 생겼으나 적절한 피부과 병원 방문하지 않아 병 심각	10.3
소계			100

자료: 김기현(201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최근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정선아 외, 2017), 해당 보고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신체학대와 정서 학대의 다양한 구체적 행위 양상을 명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체학대의 경우 ‘꿀밤’에서부터 ‘세계 흔들기’, ‘머리를 세계 당겨서 땅기’ 등 아동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실제적인 학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고, 정서학대의 경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에서부터 ‘억지로 먹이기’, ‘다른 반 보내기’, ‘분무기 뿌리기’ 등 아동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표 2-5 | 어린이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구체적 행위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꿀밤</li> <li>•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li> <li>• 엉덩이, 얼굴, 팔, 머리, 어깨, 뺨 등 때리기</li> <li>• 얼굴 잡고 흔들기</li> <li>• 밀쳐 넘어뜨리기</li> <li>• 발로 밀치거나 차기, 머리 밀치기</li> <li>• 꼬집기</li> <li>• 손을 꽉 잡기</li> <li>• 손바닥을 손톱으로 누르기</li> <li>•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기</li> <li>• 세게 흔들기</li> <li>• 물기</li> <li>• 아동 얼굴에 의료용 테이프로 공갈젖꼭지를 붙이기</li> <li>• 핀셋으로 찌르기</li> <li>• 아동이 한 문제행동 따라 하기 (깨물기, 얼굴 때리기, 신발로 때리기, 장난감으로 때리기, 깔고 앓기)</li> <li>• 체벌하기(있었다 일어났다 70 회, 자로 별바닥 때리기, 제자리 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서 땋기</li> <li>- 사고 시 대처하지 않기</li> <li>- 사고 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기</li> <li>- 아동이 울 때까지 때리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 지르기</li> <li>• 장시간 분리하기</li> <li>•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li> <li>• 아동이 잘 때 몸 위에 담요나 쿠션 올려두기</li> <li>• 방치하기</li> <li>• 화장실, 빈 교실 등에 가두기</li> <li>• 한 자리에서 생각하기(타임아웃)<sup>4)</sup></li> <li>• 장시간 무시하기</li> <li>•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거나 누르기</li> <li>• 다른 반으로 보내기</li> <li>• 아동의 작품을 찢거나 구겨버리기</li> <li>• 억지로 먹이기</li> <li>• 입 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기</li> <li>• 훌린 음식 다시 먹이기</li> <li>• 식판을 치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li> <li>• 아동의 옷에 일부러 음식을 묻히기</li> <li>• 쓸은 음식물 옆에 아동 눕히고 사진 찍기</li> <li>• 어두운 교실에서 밤 먹이기</li> <li>•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li> <li>•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종교 활동 실시</li> <li>•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기</li> <li>• 분무기 뿌리기</li> <li>• 차량에 두고 내리기</li> <li>• 하루 종일 바운서에 묶어 놓기</li> <li>• 배달 음식(짜장면 등)으로 급식 시행하기</li> <li>•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기</li> <li>• 학대 행위 목격하게 하기</li> <li>•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li> <li>• 밥, 국, 죽, 반찬을 모두 섞어 먹이기</li> <li>• 낮잠시간에 아동 방치하기</li> </ul>

자료: 정선아 외(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분석.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타임아웃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훈육지침 자료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 당 1분’을 기준으로 타임아웃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해당 자료에서는 타임아웃이 정서학대 행위로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임아웃 자체가 부적절한 아동행동지도 방안이라기보다는 실제 어린이집에서 타임아웃이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시간 또는 아동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장소에서 시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



## ■ 최근 발생한 학대사례의 실재

표 2-6 | 최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 예시

구분	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학대 내용	
		총수	연령	학대유형	학대 행위 및 상황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7	만 2세~ 만 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세계 훈็ด, 도구로 때림, 아동 던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공포분위기 조성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3명)	7	만 세 ~ 만 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머리를 세계 굽음, 머리 때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아동 몸을 들어 올림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1	만 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아동의 팔을 잡고 흔드는 행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고의적으로 반 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4	만 0세 ~ 만 1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얼굴과 온몸을 이불로 둘둘 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1	만 3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 잡아당김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2	만 세 ~ 만 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신체 때림, 턱 잡고 흔듦
7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장	1	만 5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아동의 손가락을 물
8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1	만 2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아동의 배와 사타구니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밀침
9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2명)	1	만 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차량방치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장	10	만 2세 ~ 만 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썩은 식재료 사용, 방역작업 미실시
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장	1	만 11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하루의 절반을 문이 닫힌 방에서 시간을 보냄
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2	만 2세 ~ 만 5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아동들을 반 내에 약 10분간 방치 (사례판단위원회 결정)
13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2명)	1	만 3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교사(투담임)가 아동을 50분간 방 안에 방치함

자료: 5개 FGI 참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사례 재정리

### ■ 기관의 학대사례들에 대한 판례

최근 기관 내에서 학대와 관련하여 판정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실형 및 벌금이 선고된 사례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된 실증 사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까지 확인된다. 즉, 최근의 기관 내 학대사례들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정과 보육교사 및 원장을 보호하는 판정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 ▣ 교사 실형 및 원장 벌금형 사례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원장은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판례 •

#### 기관의 아동학대 판례(사건번호 2013고단457)<sup>5)</sup>

##### 【최종판결】

-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사건개요】

-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5)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36](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36)(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2018.9.21.추출)



## 기사

기관의 아동학대 판례<sup>(6)</sup>

## 【최종판결】

- A어린이집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원장 김모(47)씨에게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되었다.

## 【사건개요-원장】

- 토하거나 구역질하는 아동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40일간 부천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돌보던 아동에게 총 45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동이 앓은 의자를 일부러 잡아빼서 넘어뜨리거나 간식이 담긴 식기를 아동에게 던지거나 하는 등, 훈육의 방법과 수단을 넘은 물리력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격리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들을 괴롭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아동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 아동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아동 연령이 범행 당시 만 3세로 물리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동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실형 선고했다.

## 【사건개요-원장】

- 원장 김 씨에 대해서 판사는 “이 씨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김 씨가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 감독상의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관리조치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교사 벌금형 및 원장 무죄 사례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혐의가 원장에게 항상 벌금형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으로 내려지지는 않았다. 최근의 사례에서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6)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107>(베이비뉴스 홈페이지 2018.10.2 1.추출)

## 판례

교사 벌금형 및 원장 무죄 사례<sup>7)</sup>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 211]  
[춘천지법 2017.1.19. 선고 2015노 945판결]

## 【판시사항】

-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교사와 원장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
- 어린이집 원장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 【판결요지】

-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갑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나,
- 원장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주 문】

- 어린이집 교사는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

## 【범죄사실-보육교사】

- 교사는 아동3(여, 당시 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 교사는 아동4(여, 당시 4세)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다.
- 교사는 아동5(당시 4세)가 울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밥을 주듯이 때렸다.
- 교사는 아동1(당시 5세)이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동1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동 2(당시 4세)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동2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아동2와 아동1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7) (출처: 춘천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5노945 판결 : 상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 일부 인정된 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종합법률정보 판례)



특히 최근에는 원장에 대한 원심의 별금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장이 무죄를 판결 받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의 학대행위를 신고할 경우 원장이나 기관이 도리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리는 판례이기도 하다.

**판례****교사 별금 및 원장 무죄 사례⑧**

-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항소 이유】**

-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주 문】**

- 어린이집 교사는 별금 200만원
-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

**【판결요지】**

- 원장이 교사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점, 원감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의 개별교육,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사회의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게 한 점, 3일에 한번 씩 상담일지를 살펴보아 어린이집 소속 아동 학부모와의 교류를 확인한 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배식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걸쳐 수업 교실을 둘러보는 등으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원장이 CCTV영상을 매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일 보육교사들과 그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사실】**

- 어린이집 교사는 2013. 9. 25. 11:12경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아동1(3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1을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아동1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땀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음 날인 09:28경 아동1의 모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원손으로 아동1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아동1이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아동1을 밀치고, 같은 일시경 교실에서 아동1의 모가 아동1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교사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아동1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교사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교실에서 아동1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아동1을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아동1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04경 교실에서 아동1이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괄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 사례

몇 년 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의 행위가 학대로 판정되어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시킨 사례도 확인된다. 즉, 명백한 학대 상황에서 법적 규제는 강력하게 발휘되었다.

#### • 재결례

#### 기관 아동학대사례의 재결례 사례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제2012-278호) 2012.9.18 기각

- 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운영하던 중 2012.5.17. 한 아동이 점심 먹기를 거부하고 놀이터에서 보육교사 없이 혼자 놀다가 놀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아동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하원 시키는 등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영유아를 훌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23개월 된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와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시킨 사실은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 다) 00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등을 때린 것이 아니라 토닥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임상적으로 볼 때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가격하여 나타난 상처이며, 사건 정황상으로 볼 때 청구인(학대행위의심자)이 아동을 신체 학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달리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출처: 대구지방법원 2015.4.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9)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88](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88) (중앙아동보호전문



### ▣ 교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사례<sup>10)</sup>

최근의 판례에서는 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기소된 사실만으로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일종의 교사보호의 판례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판례

#####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sup>11)</sup>

-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공2018상, 992]

#### 【판시사항】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 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과벌)에 해당하는 혐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유】

- 원심은, 원고가 2014. 1. 23.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5. 4. 14.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을 뿐이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

기관 홈페이지 2018.9.21.추출)

- 10) 해당 사례는 학대행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의 선고유예 판정이 자격정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어 있기에, 교사의 학대 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돋는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공유하고자 함.

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구 아동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후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 특징 및 원인

### ▶ 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 특징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기관 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가 대부분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보육교직원의 비율이 유치원교직원의 비율에 비해 2.5배~3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에서 영유아를 학대했던 행위자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인해 학대를 행한 비율이 50% 내외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특별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던 행위자들이 약 30% 내외였다.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교사가 영유아 돌봄 및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 양성과정의 내용과 질이 향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및 상호작용과 관련됨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어(Arnett, 1989)<sup>12)</sup>, 교육의 내용과 질이 현장의 민감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행위자 특성 중 그 다음으로는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경제적 스트레

11) 출처 :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12) 22개 데이케어센터의 59명 돌봄자를 비교육 집단, 대학 내 2개의 교육과정 이수 집단, 4개의 교육과정 이수 집단, 4년 대학의 아동교육 정규과정 이수 집단,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집단에서 아동을 덜 권위적으로 대했고 아동과 더 높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아동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들 중에서 4년 대학의 아동교육 정규과정 이수 집단의 돌봄자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음(Arnett, 1989).



스 및 고립'과 '성격 및 기질적인 문제'였다. 영유아의 경우 그 어느 연령대에 비해 특히 더욱 주의 깊고 밀도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하기에, 아동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고 교사 스스로의 기질 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크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작게는 기관 내 차원에서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직면한 스트레스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지지해주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등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7 | 최근 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 특징

구분	2014		2015		2016	
아동학대 전체사례	10,027건(100.0%)		11,715건(100.0%)		18,700건(100.0%)	
학대행위자	보육 교직원 295건 (2.9%)	유치원 교직원 99건 (1%)	보육 교직원 427건 (3.6%)	유치원 교직원 203건 (1.7%)	보육 교직원 587건 (3.1%)	유치원 교직원 240건 (1.3%)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74 (33.8%)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196 (66.4%)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97 (51.6%)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47 (21.5%)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496 (52.8%)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166 (49.1%)
학대행위자 특성 *중복포함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성격 및 기질문제 61(7.5%)	성격 및 기질문제 5(1.7%)	성격 및 기질문제 34(5.9%)	성격 및 기질문제 1(0.5%)	성격 및 기질문제 87(9.3%)	성격 및 기질문제 4(1.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51(6.3%)	특성없음 (27.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6(8.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3(1.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99(10.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1.8%)
	전과력 1(0.1%)	파악안됨 13(4.4%)	위생문제 1(0.2%)	특성없음 165(75.3%)	위생문제 1(0.1%)	전과력 13(3.8%)

구분	2014		2015		2016	
	성문제 1(0.1%)		특성없음 129(22.4%)	파악안됨 3(1.4%)	질환문제 1(0.1%)	성문제 13(3.8%)
	부부 및 가족갈등 3(0.4%)		파악안됨 69(12.0%)		특성없음 229(24.4%)	특성없음 129(38.2%)
	특성없음 368(45.4%)				파악안됨 25(2.7%)	파악안됨 7(2.1%)
	파악안됨 51(6.3%)					
계	810 (100%)	295 (100%)	576 (100.0%)	219 (100.0%)	939 (100.0%)	338 (100.0%)
전체	2,149(100.0%)		1,631(100.0%)		2522(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6)

### ▶ 기관에서의 학대 관련 요인

원장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서 ‘교사의 자질’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현 보육·교육 실습과정은 교사의 자질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보육·교육 현장은 미숙한 신입 교사가 때론 단독으로 보육·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자격제도 시 교사의 자질을 면밀하게 파악할 만한 제도 및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이 아동학대 발생과도 무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장과 교사의 경우 아동의 독특한 기질이 보육과 교육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며, 때문에 원장의 경우에는 교사의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교사는 서류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어렵고 힘든 돌봄 상황에 대한 동료교사들 간의 지지체계 및 멘토링이 부재한 것 역시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교사들의 경우 이러한 지지체계 마련 및 원내 분위기, 서류 업무 간소화 등 의 사안은 원장의 재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과 함께 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도 공감했으며, 폐쇄적인 원의 분위기가 학대 상황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학부모는 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학대 상황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학대의심 상황에서 원장과 교사의 미숙한 대처가 학부모의 불신을 가중시켜 고소·고발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표 2-8 | 기관에서의 학대 관련 요인<sup>13)</sup>

구분	원장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대 발생 원인 및 상황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사 자질 (책임감, 참을성)</li><li>교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li><li>아동 기질</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사 자질 (책임감, 참을성)</li><li>과중한 업무 (서류작업)</li><li>아동-교사 비율</li><li>지지체계 부족</li><li>아동 기질</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사 자질 (책임감, 참을성)</li><li>과중한 업무 (서류작업)</li><li>아동-교사 비율</li><li>폐쇄적 원 분위 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과중한 업무 (서류작업)</li><li>원장과 교사의 미숙한 대처</li></ul>

13) 해당 요인은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된 아동학대 원인과 함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인지하는 학대 발생 원인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함.

## 3

##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 [실천편]

**기관에서 아동을 둘러싼 협력 체계<sup>14)</sup>****협력 체계 필요성**

기관의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교사 및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역할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체계(학부모, 원장, 교사)의 역할과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관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학부모-교사-원장 개개인의 역할과 서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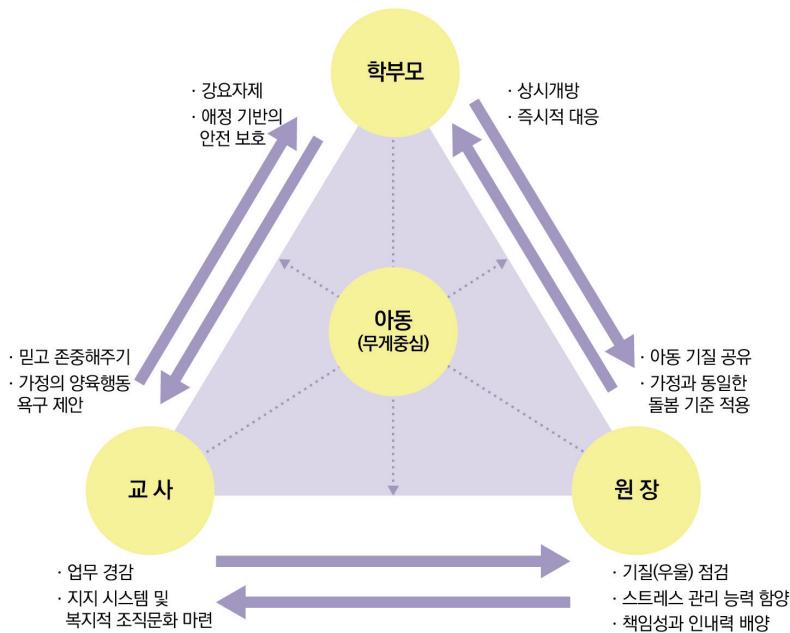
---

14) 해당 협력체계는 학부모-교사-원장을 비롯하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했던 상담원들의 인터뷰 내용과 문헌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안한 체계로, 각 대상자의 역할과 요구도 역시 인터뷰 내용과 문헌조사 내용을 기초로 정리되었음을 밝히고자 함.



## 협력 파트너십

그림 3-1 | 보육·교육을 위한 기관 내 협력 파트너십



주1. 정삼각형 구조로, 아동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안에 자리 잡음.

주2. 아동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인터뷰 및 문헌조사 내용에 기초하여 생성

### ▶ 아동

밀할 수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아동은 인권을 가진 존재이다. 아동을 개별화하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개개인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화하여 보육·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학부모

**[욕구]** 학부모는 학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아동에게 강제하지 말고 아동 의사를 존중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강했다. 한편 학부모의 경우, 기관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내 아동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외부 관찰 등)에서 학부모들이 상시적으로 자녀의 생활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신뢰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역할]**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여러 명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비신임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칫 학대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부모로서 기관이 아동에게 해주길 바라는 보육·교육의 기대감과 가치를 교사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 교사

**[욕구]** 과중한 업무 부담은 업무의 집중도를 저해하고 부족한 인력지원은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특정 아동의 돌발적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에 교사가 집중할 때 또 다른 영유아들은 방임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아동의 돌발행동이 반복될 때 교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사 개인이 혼자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는 제한적이므로 교사는 해당 상황을 학부모 및 원장, 동료 교사와 함께 공유하고 아동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 교사의 돌봄과 교육은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고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 개인의 부정적 기분이 아동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늘 자가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부모의 욕구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하여 아동 돌봄 및 교육을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 원장

**[욕구]** 교사가 이러한 아동의 행동을 책임감 있게 지켜봐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장은 또한 만약 교사가 아동의 기질 및 행동적 측면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부모와 함께 논의 및 협력하여 대안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부모마다 양육방식이나 훈육에 대한 수준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함께 협력적인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역할]** 교사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 간 지지모임과 멘토링(또는 슈퍼바이징) 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격려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와 개방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 3-1 | 영유아를 둘러싼 협력 파트너십의 강점

학부모	기관(교사, 원장)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치롭고 존중되는 느낌</li><li>•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더욱 많은 관여</li><li>• 자신 가족의 가치, 실행, 전통과 믿음 이해에 대한 존중 느낌</li><li>• 기관방문 및 원내 종사자들 간의 얘기와 계획에 대한 부담 감소</li><li>• 자녀의 가정 밖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녀 학습 및 발달을 더욱 효과적 수행</li><li>• 자녀 양육기술에 대한 자신감 고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더욱 좋은 학습 유도</li><li>• 학부모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해 공유</li><li>• 가족의 가치, 전통, 믿음에 대해 영유아를 더욱 참여시키고 기관 내에서의 소속감 발달 및 향상</li><li>•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된 환경을 영유아에게 제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정감을 느끼고 더욱 많은 교육적 혜택</li><li>• 자신감 향상</li><li>• 가정과 기관의 협력으로 학습 능력 향상</li><li>• 기관 내에서 가정 내의 언어 교감 통해 영유아의 언어 능력 향상</li><li>• 풍부한 서비스 제공</li></ul>

자료: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2009)(이재연 외, 2015:163 재인용)토대로 정리

## 영유아 권리 및 발달단계별 특성

### 영유아의 권리 이해

- 생존권: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발달권: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통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호권: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이어야 한다.
- 참여권: 아동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각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성 이해

표 3-2 | 각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성

단계	특징	대처	목표
만0세 (교사1 vs. 아동3)	• 불편함/불쾌함/불만족감을 짹얼 거림/얼굴표정/울음 등으로 표현	• 영아의 신호에 신속하고 민감하며 친절한 반응	• 생리적 욕구 이해
	• 잣은수면/쿠잉(옹알이)/한단어 말하기	• 울음/손짓/접촉/옹알이에 대해 눈 맞춤/응답	• 기질 존중을 통한 상호성 이해
	• 순한/까다로운/겁 많은 기질 등		• 낮기림과 분리불안을 애착형성 과정으로 이해
	• 특정 대상(주 양육자)과의 친밀 함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불안감	• 공포/불안감 수용하고 애착 형성을 위해 면밀한 관찰과 민감한 상호작용	



단계	특 징	대 처	목 표
만1세 (교사1 vs. 아동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동성/활동성 강화 통한 자율 성 발달</li><li>• 근육과 오감 토대로 환경을 탐색·경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오감 및 근육 발달 증진 위한 놀잇감 충분히 제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탐색적 욕구 이해</li><li>• 영아가 물 수 있음을 인지</li><li>• 울음이 영아의 의사소통의 한 방법임을 인지</li><li>• 낳기림과 분리불안 완화하고 애착관계 형성 노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으로 주변 사물 탐색</li><li>• 이가 나기 시작</li><li>• 타인을 물기도 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치아발육기나 깨물어도 다치지 않을 위생적이고 부드러운 놀잇감 제공</li><li>• 무는 흉내 및 행동 자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젖은 기저귀/배고픔/아픔/관심 등을 이유로 울면서 의사를 표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울음의 원인을 최선으로 파악하여 욕구 해결 노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낳기림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분리불안을 보이며 놀이 참가 거부/비적응</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속적인 울음/비적응을 발달 특성으로 인정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기</li></ul>	
만2세 (교사1 vs. 아동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강한 자기주장/고집스러움/젖은 기분변화/변덕스러움/격렬한 정서표현</li><li>• 욕구 좌절에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표출하며 심한 고집 부리거나 떼를 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떼쓰기 등의 감정 무시 및 억압보다는 마음을 읽어주고 협상 통해 문제 해결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긍정적 자아인식과 자율성 형성 시기임을 인지</li><li>•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행위임을 인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나’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자기 중심적이며 내 것과 친구의 것을 구별</li><li>• 소유 개념이 발달하지 않아서 공유하기를 강요할 시 더욱 고집스러워짐</li><li>•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많은 수의 놀잇감 제공하여 자기 소유권 총족</li><li>• 스스로와 친구 모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소유하기 위해 기다려야 힘을 인지시키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스로 식사하기/옷 입기/대소변 가리기 등 독립적으로 행동 하며 자율성 발달</li><li>• 성인의 간섭에 반항하기도 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인정 받는 분위기 조성</li></ul>	
만3세 (교사1 vs. 아동1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기중심적으로 상상력이 풍부</li><li>• 현실과 상상 세계 구분하지 못하거나 바람을 강하게 표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도덕적 판단 보다는 유아의 내면을 이해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기주장과 경쟁 통해 긍정적 자신감과 주도성을 형성하는 시기임을 인지</li><li>• 규범을 알게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해나가는 시기임을 인지</li></ul>

### 3.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 [실천편]

단계	특징	대처	목표
만4세 (교사1 vs. 아동20)	• 타인의 감정 지각하고 이해하기 시작	• 또래와의 상호작용 격려하고 공감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능력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절능력 향상되는 시기임을 인지</li> <li>• 약속 및 규칙에 대한 도덕성 및 친사회적 기술이 발달 및 습득되는 시기임을 인지</li> <li>• 약속과 규칙을 지키지 못 했을 시 비난보다는 다음에 더 잘하도록 격려</li> <li>• 놀이 과정 및 행동 특징 이해</li> </ul>
	• 좌절 및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면서 침울성을 기르며 이에 대한 보상 인지	• 충동 절제나 인내 통해 일을 해내면 아낌없는 격려	
	• 약속 및 규칙을 이해하며 도덕 성 발달		
	• 수치심/죄의식 생길 수 있어 거짓말 등의 방어 기제를 나타내기도 함		
만5세	• 나누고 도와주는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찬/격려/반복 학습</li> <li>• 놀이의 욕구 파악하여 원하는 놀기를 자율적 틈틈하고 참여하도록 장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기/성역할에 대한 관심 및 행동 증가</li> <li>• 성에 대한 죄책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질책 자체</li> <li>•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li> <li>• 갈등 해결을 위해 협상이나 분배 방식 등 대안적 행동 제시</li> <li>• 억압된 정서를 풀 수 있는 동적인 활동 제공</li> </ul>
	• 협동놀이/김정이입 등을 통해 친사회적 기술 형성		
	• 놀이 친구로 수용되어 함께 어울림		
	• 언어(욕하기, 심하게 놀리기, 고자질하기 등)/신체(때리기, 물건 빼앗기 등)		

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자료 재구성



## 기관에서의 일과에 따른 실천 방법

### 기관에서의 일과에 따른 이슈와 필요 자원

표 3-3 | 기관에 일과에서의 이슈와 필요 요소<sup>15)</sup>

문제 이슈		구체적 상황	필요 자원 및 방안
낮잠 시간	• 영유아 개인차 수용과 업무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낮잠시간에 교사의 업무 병행하는 구조</li><li>낮잠시간 개인차가 있는 영유아가 방치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용한 놀이 진행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화장실 가기 등 포함) 불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력 지원</li><li>서류업무 축소</li></ul>
	• 영유아 낮잠시간을 교사 휴게시간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휴게시간에 인력 추가 배치 안 되어, 교사 1명이 낮잠 시간에 영유아를 돌봄</li><li>누리보조 선생님이 존재하여도 모든 반을 모두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력지원</li><li>휴게시간의 효율적 적용 및 사용</li></ul>
	• 학부모 욕구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낮잠을 재우지 말라거나 특정 시간에 낮잠을 재워달라는 학부모의 요구</li><li>잠투정 심한 아동, 잠을 자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학부모 욕구 다양</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낮잠시간에 대한 학부모 교육</li><li>가정과 연계지도</li></ul>
식사 시간	• 식사태도 및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편식을 하거나 식사 거부 상황</li><li>돌아다니거나 식사를 혼자 먹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정과 연계지도</li><li>인력지원</li><li>이동특징 및 발달 단계 이해</li></ul>
	• 식사 속도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늦게 먹는 아동이 있을 경우 다음 활동으로의 연계가 지연</li><li>빠르게 식사를 마친 아동이 떠들거나 뛰어 다닐 때의 상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적활동 사전 준비</li><li>부모 식사 도우미 및 교사 인력 지원</li></ul>
	• 안전 위험 노출	• 식사 공간(교실)에서 놀이와 식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	• 식사와 놀이 공간 분리

15) 해당 자료는 교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내용과 연구협력진 5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 3.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 [실천편]

문제 이슈		구체적 상황	필요 지원 및 방안
놀이 시간	• 안전 위험 노출	• 교실을 이탈하거나 위험한 놀이 행동을 하거나 실내 몸놀이가 아동 간 몸싸움으로 고조	• 실외활동 대체 공간 확보 필요
	• 돌출 행동	• 또래 및 교사를 고의적으로 깨무는 등의 공격적 행동보이며 감정조절 어려운 아동	• 지역사회 전문가 및 가정과 연계지도
	• 갈등 상황	• 또래의 놀잇감을 빼앗거나 또래의 놀이를 방해하는 등 갈등상황을 만듦	• 충분한 놀잇감 제공 • 놀이규칙 정하고 사회성기술 반복지도 • 가정과 연계지도
	• 개별적 놀이 상호작용, 지원 및 갈등 상황 중재	• 영아의 경우 발달에 따른 개인차가 커서 개별적 상호작용 및 지원이 더욱 필요 • 유아의 경우 필요한 자료 및 비품 지원과 혼자 노는 아동을 격려해야 하는 상황	• 질 높은 상호작용과 놀이 확장을 위한 인력 지원
전이 시간	• 놀이 지속과 다음 활동 분주함	• 놀이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거나 다음활동(산책, 바깥놀이) 준비 시 분주해짐	• 일과 운영에 교사 재량 및 융통성 부여 • 놀이규칙 반복학습
	• 정리정돈	• 정리를 하지 않으려 하거나 배회하거나 일부러 정리를 회피하려는 상황	• 놀잇감 정리 간소화 • 놀이규칙 반복학습
	• 집단 기다리기	• 집단으로 화장실 가거나 기다리기 어려워하며 아동 간 자리다툼 상황	• 시설 수 늘리기 • 보조 인력 배치
등·하원시간	• 복합적 사건 발생	• 또래 간 싸움, 학부모면담, 뛰어다니는 영유아 등 복합적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	• 등하원시 부모 규칙 협조 필요
	• 등·하원 아동의 속도 차	• 늦게 등·하원 아동 관심 시 다른 아동들만 넘겨지게 되는 상황	• 등·하원 전담인력 배치



문제 이슈	구체적 상황	필요 자원 및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전 문제</li><li>• 등원 및 부모와 분리 거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보 이용 시 줄을 이탈하거나, 차량 내외에서 장난을 치는 상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속적 안전 지도</li><li>• 등·하원 전담인력 배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부모와 분리 거부하는 아동을 교사에게 맡기고 가버리는 경우 및 등원 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동이 등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정과 연계지도</li></ul>

## 일과에서의 실천 방법

### ▶ 교사 기본 행동 강령

#### [교사 기본 행동 강령]

- 아동도 인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성인처럼 동등하게 권리를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
- 강한 어투 및 거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교사의 어투와 표현 자체에 아동이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 과한 행동이나 표현 역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상시적인 자기 점검으로 스트레스 및 부정적 감정을 아동에게 투영하지 말아야 한다.
  - (일과 진행 전) 오늘 아동과의 일과를 침착하게 보낼 만큼 나의 정서는 안정적인가? (만약,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이에 대해 다른 동료 및 원장과 공유하고 대체 인력 투입 및 동료 교사의 감독·제재 요청 등)
  - (일과 진행 후) 오늘 아동과의 일과 중 과한 행동 및 거친 표현은 없었는가?(동료 교사와의 토의 및 CCTV 모니터링 활용)

#### [아동에 대한 이해 지침]

아동의 각 연령대별 상이한 발달적 욕구와 능력에 맞추어 행동을 이끄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효율적인 지도 전략은 아동의 기질 역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 ▶ 일과에서의 실천 방법

표 3-4 | 기관 일과에서의 실천 방법

일과흐름	아동 특성	발생 상황	실천 방법
등·하원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와의 분리 및 원내 생활에 대한 적응 필요</li> </ul>	아동의 등·하원 안전 확인 ↳ 등원 아동 체크 후 미등원시 확인(기관 → 학부모) ↳ 하원 아동 체크 후 미하원시 확인(학부모 →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동</li> </ul>	억지로 떼어 놓을 시 불안감 가중,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애정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거나 칭얼거리면서 오는 아동</li> </ul>	몸과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상태에 대해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내 있기 싫다고 떼쓰는 아동</li> </ul>	어려운 상황 공감,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적응 토록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합적 상황</li> </ul>	우선순위(다친 유아 먼저살피기) 정하기
배뇨(배변), 손씻기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광 미성숙 시기로 화장실 자주 가기도 함</li> <li>회장실 자주 가기는 유아기의 대표적인 불안 행동</li> <li>예민한 아동들은 원에서의 배뇨 및 배변활동 불편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뇨(배변)활동 어려워하는 아동</li> </ul>	불안 및 스트레스 상황이 원인인지 확인 변비 및 통증 유무 점검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 연계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된 시간 외에 배뇨(배변)를 원하거나 잦은 배뇨(배변) 활동을 보이는 아동</li> </ul>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원인인지 확인 전이시간 이용하여 배변활동이 충분하고 원활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제공 부정적 반응은 수치심이나 낮은 자존감과 직결되므로 부정적은 반응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의 배뇨(배변) 시간을 통해 선생님의 관심을 원하는 아동</li> </ul>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애착 대상에 대해 혼자서 차지하고 싶은 아동의 마음을 공감 다른 활동 시간을 통해 충분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애정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뇨(배변)를 실수한 아동</li> </ul>	방광이나 항문의 잔여물을 모두 배출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깨끗이 씻기고 젖은 옷은 행군 후 담아 가정에 보냄



일과흐름	아동 특성	발생 상황	실천 방법
급·간식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가능</li><li>소근육 미발달로 숟가락 사용 미숙 가능</li><li>몸이 아프거나 기분에 따라 식욕 저해 가능</li><li>기정과 협력하여 방안 모색, 공통된 식사습관 목표 설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급·간식을 거부하는 아동</li></ul>	급식과 간식의 시간 간격 점검 기차놀이, 비행기 놀이 등 활용하여 식사 시간의 즐거움 제공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정하게 한 이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격려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아동 의견 존중하고 학부모와 해당 사항에 대해 방향성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급·간식 어려워하는 아동</li></ul>	숟가락질 또는 훌로 식사 어려운 아동은 교사가 개별적 도움 제공 크기 및 식감에 따른 어려움 아동의 경우 잔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편식 아동</li></ul>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거부는 새로운 음식에 친숙해지도록 시각 및 후각 활동 장려 가정 내의 편식 음식이라면 강제하지 말고 학부모와 (1~2회 권장, 비선퀴 등)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간 지체 아동</li></ul>	급·간식 시간 내에서만 급·간식이 가능한 규칙을 아동이 충분히 숙지도록 안내
전이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욕구 지연시간이 짧음</li><li>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순서 기다리기 및 줄을 서는 것이 어려운 아동</li></ul>	화장실 가기, 양치질하기, 식사 배식하기 등의 동시 진행보다는 유동적 조정 가벼운 활동 참여하면서 순서 기다리기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조정
정리 정돈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장난감 정리 방법을 모르거나 하기 싫어 회피할 수 있음</li><li>놀이를 갑자기 마무리 지을 경우 쉽게 전환 어려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 아동</li><li>놀이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는 아동</li></ul>	놀이 시간의 충분성 검토 연령에 적합한 환경 조성 여부 점검 다수를 향한 지시어보다 정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안내 영어의 경우 하나의 영역만 정리하도록 정리 습관화 목표 다음 활동을 위한 놀이시간이 끝남을 안내, 5분 전에라도 미리 안내하여 놀이를 끝낼 수 있는 시간 여유 제공 역할활동(참새가 블록을 치우기 힘들어 하니 독수리가 되어 도와주자 등) 통해 유도

일과흐름	아동 특성	발생 상황	실천 방법
낮잠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높으면 낮잠이 어려울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들지 못하는 아동</li> <li>• 조그만 소리에 깨는 아동</li> <li>• 오래 자는 아동</li> <li>• 금방 깨는 아동</li> </ul>	<p>예민한 아동의 경우 밝기, 소음, 이불 등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 개선      영아의 경우 개별습관(업혀서 자기, 공갈 젖꼭지 물기, 함께 자기 등)에 따라 가정과 연계하여 친숙한 환경 조성      낮잠 전 충분히 에너지 발산      낮잠을 못 자거나 일찍 깨는 아동은 한쪽에서 조용히 활동하도록 배려</p>

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자료와 연구협력진 5인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합하여 재구성

## 훈육 실천 방법<sup>16)</sup>

### 보육·교육 환경에서 훈육을 위한 기본 실천 전략 및 방법

아동의 각 발달단계에 대한 특성 이해와 함께 아동이 보여주는 특징이나 문제적인 행동들은 전형적으로 어린 나이에 나타났다가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5 | 보육·교육 환경에서 훈육하기 위한 기본 실천 전략 및 방법

실천 전략	실천 방법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규칙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을 자주 반복 ('서로 도와주기',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기' 등)</li> </ul>
무슨 뜻인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하지마세요' 대신에 '하세요'를 사용 (예, '뛰지 마세요' 대신에 '천천히 걸으세요'라고 말하기)</li> <li>• 아이들을 훈육할 때,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고 문장을 짧고 간단하게 유지하고 제시해주기</li> </ul>

1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보건복지부(2016)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어린이집용)」과 미국 eXtention(<https://articles.extension.org/>, 2018. 9.6, 9.14 추출)에서 제시한 훈육 방법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실천 전략	실천 방법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통 그냥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아이들은 말에 집중을 잘 못하므로, 훈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동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얘기를 경청해 주기</li></ul>
좋은 본보기가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이들은 성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므로, 좋은 본보기 되기</li></ul>
좋은 본보기의 아동을 칭찬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이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우므로, 서로에게 어떻게 양보하고 친절히 대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칭찬해주기</li></ul>
간단하고 명확한 선택지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선택지 주기</li><li>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toddler)은 빨간색 컵과 초록색 컵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사육사 역할을 할 건지 조종사 역할을 할 건지 선택 가능</li></ul>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지적할 때 다른 아이들의 앞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말하기</li><li>규칙에 관한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아이들이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어 보기</li></ul>
착한 아이에게 집중이 가도록 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나쁜 행동을 했을 때 주목을 받게 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주목을 받게 하기</li><li>매일매일 아이들 각각에게 격려를 해주기</li><li>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그 행동에 대해 언급해주기</li></ul>
구체적으로 격려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단지 ‘잘했어’, ‘아름다운 그림이네’와 같은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무엇을 옳게 했는지, 아이들이 왜 자랑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기</li></ul>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놀이 활동을 이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어린이용 연극에서 캐릭터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매너를 사용하고 친절해지는 방법을 보여주기</li></ul>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가르쳐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술로, 어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교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4가지 단계의 사과방법을 가르쳐주기 1) 다른 아이를 보기 2)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기 3) “미안하다”고 말하기 4) 이유를 말하기</li></ul>

실천 전략	실천 방법
문제행동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약 아이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진다면 아이에게 빗자루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보여주기</li> <li>만약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한다면, 아이에게 벽을 청소할 수 있는 걸레를 주기</li> </ul>

자료: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3/basic-tips-child-care-providers-can-use-to-guide-childrens-behavior>(eXtention 홈페이지 2018.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 훈육방법 정하기<sup>17)</sup>

### 부적절한 훈육의 예

교사가 1회성으로 아동에게 ‘나쁜 짓을 하는 어린이는 경찰에 잡아간대요.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으니 경찰아저씨한테 혼내라고 얘기 해야겠다’ 하였고 이에 아동이 울음

### 합리적인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아동의 행동에 대해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예,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 ‘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
- 정서 반응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목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사용)
-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함
-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 상황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 또는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 ▶ 훈육 시 어떠한 도구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으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을 발생시키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

17)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1/encouragement-is-more-effective-than-praise-in-guiding-childrens-behavior>(eXtention 홈페이지 2018.9.6., 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표 3-6 | 훈육방법 정하기

훈육 방법	실천 방법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얼마나 많이 개선됐는지를 말함으로써 아동이 자부심 갖게 하기</li><li>• 노력에 대한 격려 통해 아동의 행동 발전시키기</li><li>• 격려 받는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움</li></ul>
잘못된 행동 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이의 시선으로 보기</li><li>• 공간이 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li><li>• 현명하게 공간을 정리하기</li><li>• “달릴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차단하기</li><li>• 쉽게 장난감을 찾을 수 있도록 장난감과 용품을 정리</li><li>• 장난감이 충분한지 확인하기</li><li>• 장난감이 아이들의 연령과 능력에 일치하는지 확인</li><li>• 장난감과 재료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기</li></ul>
잘못된 행동에 대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 아동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식하기</li><li>• 긍정적이 되기(아동의 강점에 대해 얘기하기)</li><li>• 성인이 주도하는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강조하기</li><li>• 나눔을 장려하고 나누는 아이들에게 긍정적 피드백 주기</li><li>• 교구 등을 이용하거나 경쟁관계 관리 방법에 관한 책 읽고 캐릭터 등에 대해 얘기해 보기</li></ul>

자료: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1/encouragement-is-more-effective-than-praise-in-guiding-childrens-behavior>(eXtention 홈페이지 2018. 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표 3-7 | 보상의 유형

사회적 보상	활동적 보상	물질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소</li><li>• 안아주기</li><li>• 등 두드려주기</li><li>• 칭찬하기</li><li>• 쓰다듬어 주기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li><li>• 만화 영화 보여주기</li><li>•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 놀이 하기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이스크림</li><li>• 공, 오락기, 옷</li><li>• 돈, 책</li><li>• 학용품, 장난감 등</li></ul>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정중한 요청]

-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느냐”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00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라고 말한다.
-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00야, ...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 거 같구나, 어서 하렴.”
-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 ‘나-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나-전달법]

-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한다. 이때,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여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아동의 행동에 집중한다.
-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화가 났다”라는 표현 보다는 “속이 상하다” 또는 “걱정 된다” “피곤하다” 등의 진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유를 설명한다. 즉, 아동이 취한 행동이 상황(수업 또는 당신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를 “~하기 때문에”的 말을 사용하여 설명해 주되,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 [논리적 결과]

- 이 때, 논리적 결과를 고의적인 보복행위와 구분하여야 한다. 논리적 결과는 아동의 그릇된 행동과 연관을 지어 논리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이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진다.

- 예를 들어, “낙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를 못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결과는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효과적이다.

### [타임아웃]

#### • 타임아웃 단계

- 타임아웃을 사용할 한 가지 대상 행동을 선정한다.
  - 타임아웃 장소로 사용할 따분한 공간(예: 생각하는 의자, 거실 모퉁이)을 선정하되, 아동에게 무서운 장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아동에게 타임아웃에 대해 설명해 준다.
- 대상 행동이 나타나면,
- 10초 이내에 10마디 이하를 사용하여 타임아웃 장소에 보낸다.
  - 휴대용 타이머를 맞추어(연령 당 1분) 아동이 들을 수 있는 곳(1~2m 가량 떨어진 곳)에 둔다.
  - 타이머가 울리기를 기다린다.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 한다.
  - 타이머가 울린 후,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영유아의 기분(짜증과 분노)에 따른 훈육 실천 방법

**[짜증 다루기]** 이 감정은 특히 영유아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짜증은 성장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대부분의 영유아는 좌절감에 도달하면 짜증을 낼 수 있다. 영유아의 짜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관련하여 신속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에서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짜증을 내는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짜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 3-8 | 영유아의 짜증 다루기

짜증을 내는 영유아의 특성	짜증을 다루는 법	짜증 예방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짜증은 영유아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남</li> <li>영유아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사각 블록이 둑근 구멍에 맞지 않아도 일부 유아는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몸을 던질 수 있음</li> <li>영유아는 매우 쉽게 좌절하고 문제해결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음</li> <li>영유아는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할 때도 짜증을 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의 짜증에도 침착하기</li> <li>심호흡을 몇 번 하고 짜증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최소 30초 이상을 두기</li> <li>영유아의 관심을 다른 것에 집중시키기(주의 집중이 짧은 영유아에게 특히 효과적)</li> <li>다른 영유아와 떨어져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li> <li>영유아를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키기</li> <li>영유아가 진정될 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의 짜증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특정 공간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li> <li>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일과를 지속하기 (식사 및 낮잠 시간과 같이 아동이 배고픔과 피곤함에 짜증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이해하기)</li> <li>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기 (낮잠시간: 낮잠 자겠니? 대신에 '지금은 낮잠 시간인데, 어떤 동물과 자겠니?')</li> <li>활동이 끝나기 전에 아동에게 미리 귀뜸하기(5분 안에 미술 테이블을 청소해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들어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li> <li>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좌절을 겪지 않도록 영유아의 능력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li> <li>규칙 강요는 짜증으로 반응될 수 있으니 몇 가지 중요한 규칙만 선택하게 하기</li> </ul>

자료: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413/dealing-with-toddler-temper-tantrums-in-child-care> (eXtention 홈페이지 2018.9.14. 내용 추출하여 재구조화)

**[분노와 좌절]** 분노와 좌절은 어떤 아동들에게 공통적인 감정이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분노를 식별하고 분노가 정상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영유아가 분노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산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의 분노와 화남은 영유아가 감정을 식별하도록 돋고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제시해주고, 영유아가 분노와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보여줌으로써 영유아의 분노와 좌절 다루기를 도울 수 있다.



표 3-9 | 영유아의 분노와 좌절 다루기

분노와 좌절을 표시하도록 돋기	분노와 좌절을 다루는 모델링 방법	분노와 좌절을 다루도록 돋는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유아는 분노와 다른 강한 감정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감정을 표현할 단어 등 제공하여 영유아가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돋기</li><li>•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 감정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이 있음을 영유아에게 이해시키기</li><li>• 분노와 화가 없는 척 가르치는 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무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이 감정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게 할 수 있음</li><li>• 도서 등을 통해 “00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을 묘사할 수 있도록 돋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들은 주위의 어른을 보면서 분노와 회를 다루는 법 학습</li><li>• 화가 난 상황에서는 “선생님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라는 말을 통해 교사의 느낌을 건강하게 표현하기</li><li>• “장난감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와 같이 화를 내는 감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예를 들어줌으로써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영유아에게 학습시키기</li><li>• 산책,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재미있는 관심거리 찾기 등의 분노 관리 기술을 아동에게 보여주기</li><li>• 기분이 나아지는 방법 등을 아동에게 설명해주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분노와 화가 난 감정일 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거나, 상처주거나, 물건을 깨거나 파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를 영유아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li><li>• “나는 00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로 말함으로써 감정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기</li><li>• 그림을 그리거나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하기</li><li>• 별을 구르거나 주먹을 훅들어 분노나 화를 표현할 수 있게 하기</li><li>• 조용한 쪽에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돋기</li><li>• 재미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u>스트레스</u>를 줄이도록 돋기</li><li>• 점토를 두드리거나 특정 공간에 물을 뿌려 분노나 회를 표현하게 하기</li><li>• 달리기, 등반, 점프 또는 기타 신체활동을 통해 분노를 풀 수 있게 하기</li></ul>

자료: [\*\*\[스트레스\]\*\*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아동은 보육·교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수 있다. 교사는 어린이의 스트레스를 식별하고 스트레스에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와 성인 모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보육·교육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35/handling-challenging-behaviors-in-child-care(eXtention단체 홈페이지 2018.9.14. 추출하여 재구조화)</a></p></div><div data-bbox=)

표 3-10 | 영유아의 스트레스 다루기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	스트레스 해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의 변화</li> <li>• 새로운 보육·교육 환경</li> <li>• 또래간의 싸움 또는 따돌림</li> <li>• 수면 부족</li> <li>• 혼잡한 보육 환경</li> <li>• 새로운 형제, 자매</li> <li>•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li> <li>• 집에서의 갈등</li> <li>• 가족유형 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동이 정기적으로 자고 있는지 확인</li> <li>•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매일 신체 활동 실시</li> <li>• 매일 긴장을 풀고 조용한 시간 갖기</li> <li>•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li> <li>• 한 번에 한 가지만 취하고 아동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li> <li>• 친구들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li> <li>• 아동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 찢음 -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로 종이를 구겨서 공으로 만들어 던지기 놀이</li> <li>• 손가락 그림 - 오래된 샤워 커튼, 플라스틱 테이블 천 또는 신문으로 그림 그리기(손가락, 손, 팔꿈치를 사용)</li> <li>• 등동적인 놀이 - 달리기, 등산 활동과 공놀이 등을 통해 혈액(교사도 함께 참여)</li> <li>• 웃음 - 아동과 함께 웃을 시간을 가지고,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놀기</li> </ul>

자료: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99/helping-children-cope-with-stress-in-child-care>(eXtention단체 홈페이지 2018.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물기]<sup>18)</sup> 비록 많은 아동들이 물지 않지만, 영유아 사이에서 물기 행동은 흔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기는 약 18개월에서 3~4세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성인들이 영유아의 물기 행동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아동의 물기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이러한 이유 및 물기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18)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365/why-do-some-children-in-child-care-bite-others> eXtention단체 홈페이지 2018.11.14. 추출하여 재구조화)



표 3-11 | 영유아의 물기 행동 다루기

시기별 물기 행동	물기 행동의 원인	물기 행동 예방 위한 실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가 나는 시기</li><li>• 입을 사용한 탐구</li><li>• 타인 반응 유도</li><li>• 주의 끌기</li><li>• 좌절감과 긴장</li><li>• 모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가 날 때의 불편함 해소 위해 물건 씹음</li><li>• 사람 vs. 장난감 씹는 차이 이해 못해 사람 물기도 함</li><li>• 물기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울거나 비명 지를 때 놀라기도 하지만 이러한 반응을 통해 배움</li><li>• 무는 것을 빨리 배운 영유아는 주변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을 것임</li><li>• 좌절감을 표현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거나 긴장 풀기 위해 물 수 있음</li><li>• 누군가가 무는 모습을 본 이후에 모방할 수 있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씹기 가능한 부드러운 천 제공하여 사람을 물지 않도록 유도</li><li>• 탐구할 대상이 충분하도록 감독</li><li>• ‘물면 안 돼, 물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야’임을 말하고,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을 다친 아동에게 건네게 하거나 위로하는 방법 가르치기(물기 행동이 미안하지 않은 아동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긍정적 행동을 가르치는 것 아님)</li><li>• 모든 영유아에게 매일 최소한 일deal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두기</li><li>•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치기(긍정적인 방법으로 감정 표현, 또래가 싫은 행동을 하면 ‘싫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li><li>• 물기 행동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 주기</li></ul>

## 기관 차원에서의 실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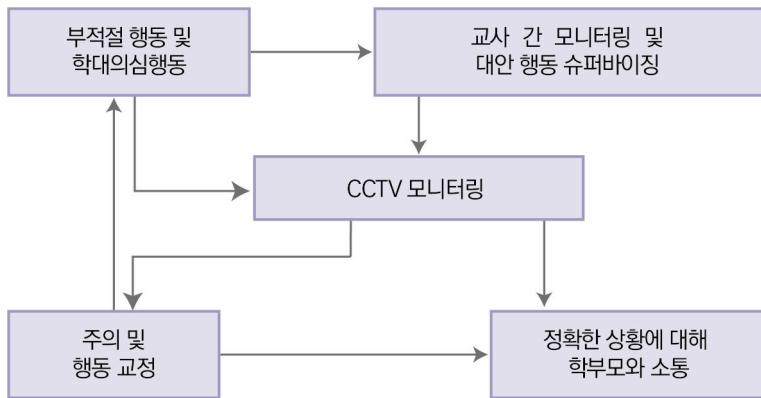
**[CCTV의 활용]** 기관에서 CCTV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매개체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첫째, CCTV가 아동학대의 증거보다는 학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기관 내 종사자와 학부모 간 신뢰관계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CTV를 활용하여 부적절한 행동 및 위험 상황에 대해 동료 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교사는 행동적 교정을 해 나갈 수 있고 이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더욱 큰 부정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CTV를 활용한 상시적인 동료 점검은 서로 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동료 간의 굳건한 지지체계를 쌓을 수 있게 할 것이다.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위

험 상황이나 종사자의 부정적 태도 및 행동이 인지되었다면, 이에 대해 학부모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이후의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요구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기관 종사자와 보호자 간의 보다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만약 기관 내에서 실제적으로 학대가 발생했다면, 이에 관해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학부모의 CCTV 열람 요구와는 별도로 기관 자체 내에서는 CCTV를 활용하여 정확한 학대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가 발생했다면, 잘못한 행위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이 어떠한 부정적 상황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학대 상황에 노출되었던 피해아동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부정적 경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관 내 종사자와 학부모가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기관에서는 학부모에게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즉시적 반응과 열린 대응을 하여 피해아동의 이후 긍정적 적응과 회복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을 둘러싼 협력 체계 간의 노력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림 3-1 | CCTV를 활용한 기관 내 아동학대 예방 실천



##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15). 선생님이 꼭 알아야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경기도교육청(2017).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 교육부 내부자료(2017).
- 김기현(201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김아름·유해미·박은영·장민선(2017).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 외(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총괄보고서) -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한국형사정책연구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김호현(2016). 흡스의 눈으로 본 유아 학대 교사. 열린교육연구(24), 49-6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무부(2017).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어린이집용).
-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



### 육방법.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 심향영육아원(2016).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 유계숙·양수진·조선아(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정책연구, 10(1). 241-268.
- 이소희(2018). 보육현장 중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서울: 신정.
- 이윤진(2018). 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논총 20(1).
- 이재연·안동현·황옥경·구은미·한유미·이완정·한지숙·김경륜(2015). 아동권리 0-8.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 이천현(2014).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27). 167-198.
- 정선아 외(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분석.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용 안내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 <http://www.korea1391.go.kr/new/eXtention>: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3/basic-tips-child-care-providers-can-use-to-guide-childrens-behavior>.
- 최은영(2016).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 교직원, 부모의 경험과 인식. 열린부모교육연구 8(1), 199-216.
- 최혜영(2015).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이해. 인지발달중재학회지 6(2). 59-81.
- 한국영유아보육학회(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지침 및 매뉴얼. 사례·판례 원인 및 대응방안. 경기도: 양서원.
- Arnett, J. (1989). Caregivers in day-care centers: Does Training Mat

- te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541-552.
- Arnold, D., H., McWilliams, L., and Arnold E., H. (1998). Teacher Discipline and Child Misbehavior in Day Care: Untangling Causality with Correlational D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 276-287.
- Brown, P., and Elliot, R. (1965). Control of aggression in a nursery school cla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 10 3-107.
- Scott-Little, M. C. & Holloway, S.D.(1992). Caregivers' attributions about children's misbehavior in child-care cent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41-253.
- Swiezy, N. B., Matson, J. M., and Box, P. (1992). The good behavior game: A token reinforcement system for preschoolers.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14, 21-32.



# 부 록

- 부록 1 | 기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요령
- 부록 2 | 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
- 부록 3 | 유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진단
- 부록 4 | 성인 우울자가선별검사  
(Center for Epidemiological-Depression Scale : CES-D)





## 부록1

## 기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요령

## 신고의무자 범위 및 역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 요령

부록표 1-1 | 신고의무자의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처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li> <li>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li> </ul>	영유아 보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li> <li>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직원</li> </ul>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전담공무원</li> <li>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지원 수행인력</li> </ul>	유아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직원</li> <li>강사 등</li> </ul>
가정폭력 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 관련 상담소</li> <li>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li> </ul>	초·중등 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직원</li> <li>전문상담교사</li> <li>산학겸임교사 등</li> </ul>
건강가정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li> </ul>	학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li> <li>교습소의 교습자·직원</li> </ul>
다문화가족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li> </ul>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li> <li>의료기사</li> </ul>
한부모가족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li> </ul>	청소년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시설</li> <li>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li> </ul>
사회복지 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전담공무원</li> <li>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li> </ul>	청소년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li> </ul>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원시설</li><li>•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li></ul>	장애인 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li></ul>
성폭력 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li><li>•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li></ul>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신건강복지센터</li><li>• 정신의료기관</li><li>• 정신요양시설</li><li>•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li></ul>
소방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구급대의 의원</li></ul>	아이돌봄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이돌보미</li></u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li></ul>	입양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li></ul>

## 신고자 보호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 3, 제62조 제2항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조치하고 있다.

- ① [신고자 보호제도] 아동학대의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다.
- ②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누구든지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③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신고 절차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만약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문항 중 1개 문항 이상에 “예”로 체크될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고의무자는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고 절차

### 부록 그림 1-1 | 아동학대 신고 요령



#### 신고의무 불이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범죄를 일제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 아동학대 신고요령

STEP 01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
- 아동학대 의심사항 확인
- 응급상황 시 이동안전 우선확보  
(예: 긴박한 상황의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 신고)

STEP 02



#####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

STEP 03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생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

자료: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 (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



## 부록2

## 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

## 기관 아동학대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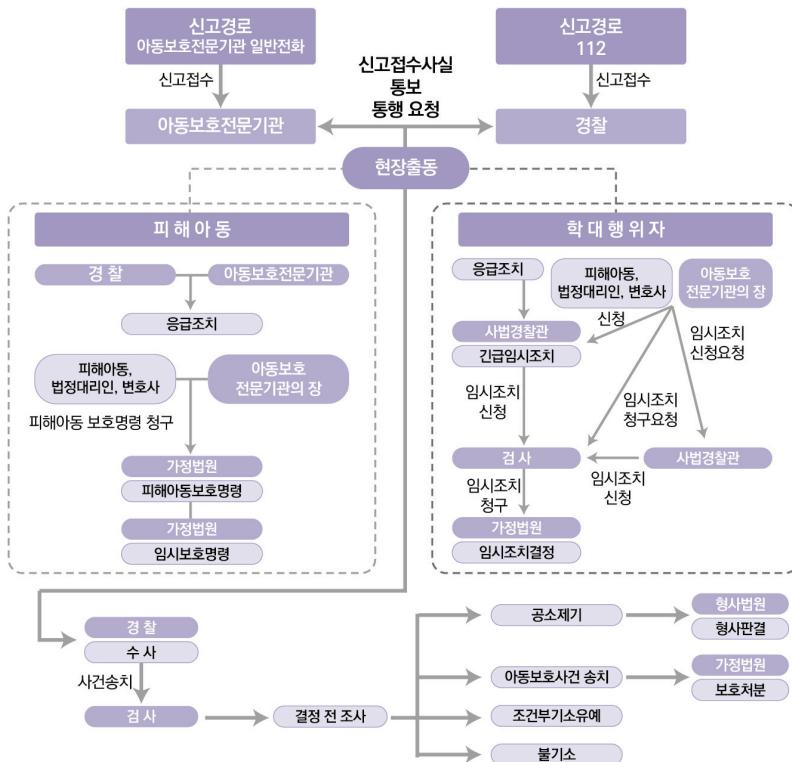
## 기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입 실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과정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과정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학대행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사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관장 또한 행위자의 자격 중단 또는 취소, 기관의 운영 정지 및 폐쇄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관련인(피해영유아, 동일 기관 영유아, 피해 영유아의 부모, 비피해 원아 부모, 가해행위자, 비가해 동료교사, 기관 운영자,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간의 갈등과 긴장 및 이해관계가 실질적인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례 개입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9)</sup>.

학대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행정 처벌 및 처분에 따른 이행 외에도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9) 자문의견 반영 내용임.

부록 그림 2-1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 부록3

## 유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 생활 속의 스트레스 대응 요령

1. 주위 사람을 잘 활용한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가족, 친구, 지인, 회사동료와의 대화를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2. 취미활동, 명상,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감쇄시킨다.
3.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한다.
4.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발생원인 제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5.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역할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수퍼바이저를 만들어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킨다.
6. 자신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꾸준하게 한다.

## 분노조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 법	내 용
생각 중단하기	지금 자신이 갖는 분노 감정이 과연 관심을 출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화를 내게 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는 “그만 멈춰!”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속으로 외치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 인지를 정한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적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 사라졌거나 관심 밖에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자신을 칭찬한다.
관심 바꾸기	화가 나는 순간에 덜 성가신 것, 예를 들면 잡비, 라디오 프로그램, 사람 관찰하기 또는 공상하기 등 관심을 순간적으로 다른 곳에 돌려서 잠시 벗어나 본다. 때때로 효과적이다.
이완하기와 명상하기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정신을 집중한다. 숨을 내 쉴 때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단어나 문구를 반복해서 말한다.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이완과 명상을 계속 한다. 집중이 어려우면 단순히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도 좋다.
근육이완	몸의 긴장을 풀어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운동을 한다.
자극제를 피하기	가능한 담배를 끊고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단 음식물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과음과 과식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사회봉사활동 하기	자원봉사 단체를 한 곳 정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이런 경험은 보람과 인내를 키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공감하기	상대가 하는 행동의 동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많은 경우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료: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 부록4 성인 우울자가선별검사

(Center for Epidemiological-Depression Scale : CES-D)

※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 주십시오. / 점수( )

0.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1. 가끔 있었다(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2. 종종 있었다(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
3.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기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적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1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내가 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별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앞으로 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 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 자신이 싫다.	
	3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질책한다.	
	3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2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자료: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